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73호 2013년 5월 22일(수)

공 고

- 「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」 입법예고..... 2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「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」 입법예고

「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5월 22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

2.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

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의 명칭 개정에 따라 “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조례”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 개정 : 설악문화축제위원회를 속초축제위원회로

나. 조례 본문中 축제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·전화번호

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217-030/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469-6)

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(전화: 033-639-2049, FAX: 033-639-2345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으로(033-639-2049)
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”를 “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”을 “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”으로 한다

제2조 중 “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”을 “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</p> <p><u>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속초시의 대표 축제인 설악문화제 및 그 밖의 축제 육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<u>설악문화축제위원회</u>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원회 설립·운영) 사단법인 <u>설악문화축제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명</p> <p><u>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 지원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속초시의 대표 축제인 설악문화제 및 그 밖의 축제 육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<u>속초축제위원회</u>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원회 설립·운영) 사단법인 <u>속초축제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